

## 금강대학교 전체 전임교수 직무 강령

제 정 : 2016. 3. 1.

개 정 : 2018. 5. 21.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강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설립이념 구현과 설립목표의 조기 실현을 통해 본 대학교 전체 전임교수의 자존감과 학문적 권위를 재건하고 향후 4년간 교육부의 구조개혁사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근무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이념” 이라 함은 일반학문분야의 경우 국내 최정상 수준의 교육수월성, 불교문화학의 경우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수월성 구비를 의미한다.
2. “설립목표” 라 함은 일반학문분야의 경우 본 대학교 학부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 그 성과가 교육영역에서 국내 10위 이내의 수준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아울러서 ‘불교문화학부’ 의 경우 소속 전임교수의 연구 성과가 국내 10위 이내의 수준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3. “집무강령” 이라 함은 2015학년도 말(2016년 2월 중) 2차에 걸친 전체교수회의를 거쳐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과 교원성과급제도 시행을 위한 협의를 통해 향후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전임교수 스스로의 규범을 의미한다.
4. ‘학부특성화계획’ 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속 학부 전임교수 전원 합의로 학부 교육특성화계획을 수립·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단위사업들의 계획, 추진, 성과평가, 피드백 등의 내용 총합을 의미한다. 다만, ‘학부특성화계획’ 은 매년 기획관리처장 등과 협의하여 수행 목표와 단위사업을 조정 개선하여야 한다.

**제3조(규범근거)** 이 규범은 교원인사규정 제33조의9 제2항에 근거를 둔 강령으로 광의로는 전체 전임교수의 본 대학교 설립이념에 근거를 둔다.

**제4조(집무 원칙)** ① 전체 전임교수의 학기 중 집무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강의가 있을 경우는 강의 시작시간)부터 18시(강의가 지속될 경우는 강의종료 시)까지 소속 학부생들의 학업 정진과 자신감 및 자존감 형성을 위해 교육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2. 주중 하루는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기숙 지도하며, 또 1일은 오후 9시까지 캠퍼스 내에서 미래진로, 학업, 취업, 개인고충, 심리 상담과 지도를 하여 소속 학부생의 미래 지도자적 소양을 함양한다.
3. 기타 주중 근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부특성화계획 내에 학생지도 및 면담계획 등을 수립하여 준수한다.

② 방학기간 중 직무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학부 특성화계획에 의거 방학기간 중 해당 단위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방학기간 중 직무요령은 학기 중 직무요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한시적용)** 이 강령은 2019학년도말(2020. 2. 28)까지 적용한다.

**제6조(준수)** 이 강령은 전체 전임교수가 준수하여 본 대학교의 발전을 조기에 이루고, 전체 전임교수 및 구성원의 자존감과 금강의 학문적 우월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조(발전노력비례)** 이 강령의 시행으로 전체전임교수의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가 높을 경우 본 대학교는 그에 상응한 구성원 존중 정책을 시행하여 자존감과 학문적 위엄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부 칙

이 제정 강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강령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